

## 2025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

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의 양산화 기반을 마련하고, 상용화에 기여하고자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2월 7일  
용인시산업진흥원장

### 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:** 용인 관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제품의 양산화 기반 마련 및 상용화 촉진
- 사업기간:** 2025. 2.~8.
- 지원규모:** 15개사 내외
  - 기업당 최대 1,000만원 이내 지원 (공급가액 기준, 부가세 제외)
  - 신청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(기업부담금 10% 이상)
    - 지원금액 예시(지원금:매칭금=9:1)
      - 총 사업비(공급가액) 1,100만원인 경우, 지원금 990만원, 기업부담금 110만원
      - 총 사업비(공급가액) 800만원인 경우, 지원금 720만원, 기업부담금 80만원
      - 총 사업비(공급가액) 1,200만원인 경우, 지원금 1,000만원(최대 한도), 기업부담금 200만원
- 지원내용**

지원분야	세부내용
PCB 제작	회로 설계를 근거로 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도체회로를 절연기판의 표면 또는 내부에 형성하는 기판 (예: 회로설계, 아트웍, SMT, 샘플제작 등)
목업 (Mock-up)	실물과 동일 또는 축소된 크기의 제품을 제작하여 특징과 형태 및 기능을 나타내는 시제품 모형 (예: 소프트목업, 디자인목업, 워킹목업 등)
금형	동일형상,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금속으로 제작한 주형(틀) (예: 프레스금형, 사출금형, 다이캐스팅금형, 기타금형 등)
제품개발	신제품 개발, 기존 제품의 고도화 및 개량화를 위해 제작한 산출물 (PCB, 목업, 금형 제외) ※ 유형적 산출물이 없는 단순설계(업, SW개발 등)·테스트 비용·장비 구매·식품류 등 지원불가

※ 분야별 중복신청(예시:목업+금형)이 가능하나 최대 지원금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함

## 2

### 신청자격

---

□ 지원대상: 용인 소재 본사(본점)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\*

\* 중소기업 범위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(별첨1)

□ 제외대상

- 진흥원이나 유관기관,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과제 또는 유사한 사업(아이디어)으로 지원받은 경우(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)
  -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,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
-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(별첨2 참고)
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(법인/개인)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
- 부도 또는 휴·폐업 중인 기업
-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
-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·모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
- 기타 관련 규정, 중복성,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

## 3

###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

---

□ 선정방법

- 외부 평가위원의 5명의 선정평가(서면평가)를 통해 선정
  -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계산
-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 -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
  - ※ 선정 후 결격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한 탈락(포기)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
-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- 선정평가 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

□ 평가기준표

○ 선정평가 평가표

평가항목	세부평가항목	배점
지원의 필요성	- 추진 목적 및 배경 - 추진 필요성	20점
기업(제품) 역량	-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- 기업 현황(인증, 특허, 유망중소기업 등) - 사업수행능력 -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	20점
사업계획의 적정성	-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-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-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- 활용계획의 타당성	40점
기대효과	- 예상 성과(매출, 고용, 인지도 등) - 파급효과(산업적, 경제적 효과 기여)	20점

○ 선정평가 가감점 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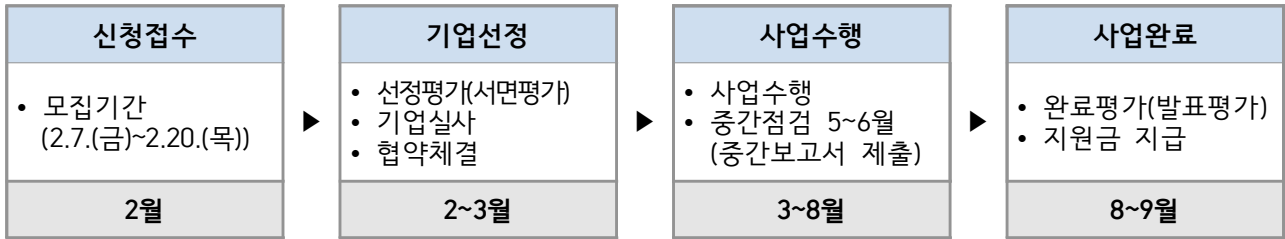
구분		점수	비고	
가점	진흥원 입주기업	+1점		
	여성기업	+1점	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	
	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	+1점	용인시 인증서 ※ 중복 적용하지 않음	
감점	지원금액 총계 (전년도)	5천만원 이상	-4점	-
		3천만원 이상	-3점	-
		3천만원 미만~2천만원	-2점	-
		2천만원 미만~1천만원	-1점	-
	매출액 (전년도)	300억원 이상	-4점	-
		300억원 미만~200억원	-3점	-
		200억원 미만~100억원	-2점	-
		100억원 미만~50억원	-1점	-

※ 가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,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

## 4

## 추진일정

### □ 추진절차 및 일정



- ※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되며, 완료평가는 발표평가(결과물 지참)로 진행됨
- ※ 중간·완료평가 시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동행한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- ※ 상기 일정은 추후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지원금 지급

#### ○ 지급방법: 후지급

- 사업 수행 후 완료평가 결과가 '적정(70점 이상)'일 경우 지원금 지급
- 사업수행에 실패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
- 사업완료 결과보고 서류(소요비용 등) 검토 후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  
(기존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의 항목과 금액은 불인정 및 지원금 지급 불가)

#### ○ 지급처: 지원기업에 직접 지급

#### ○ 지급조건: 사업 결과물 제작비용 이외의 비용은 지원 불가

- 부가가치세, 송금수수료, 직접 인건비, 여비 등의 항목 지원불가

## 5

## 신청방법

### □ 신청기간: 2025. 2. 7.(금) ~ 2. 21.(금) 17:00 까지

- ※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 (최소 1일전)
- ※ 마감일에 신청이 몰려 접속이 어렵거나 사이트 오류가 발생하는 등 기타 어떠한 사유로든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(신청접수 불가)

### □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(용인기업지원시스템 이용 <https://ybs.ypa.or.kr/portal.do>)

- ※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(방문/메일/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불가)
- ※ 모든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

### □ 문의처

- 기업육성팀 031-323-3013 ([mrcho@ypa.or.kr](mailto:mrcho@ypa.or.kr))

## □ 사업신청 및 선정

-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된 후에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
  - ※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,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
- 사전에 제작한 시제품으로 본 사업 신청 불가, 위반 시 선정 및 지원 취소
- 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,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,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취소
  - ※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 확인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
  - ※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  - ※ 사업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
- 협약기간 동안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
  - ※ 협약기간 내 용인이 아닌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
-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

## □ 지원금 집행

- 모든 사업비(지원금,기업부담금)는 부가가치세와 송금 수수료 등은 제외(지원 불가)
-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,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및 지급 불가
- 완료보고서 검토 후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 (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의 항목과 금액은 불인정 및 지원금 지급 불가)

## □ 사업수행

-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간보고·완료보고·정산보고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정한 대행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경해야 함
  - ※ 사전 승인없이 무단변경 후 사업 수행하는 경우 지원금 불인정(지급불가) 등 제재조치 실시

- **진흥원 승인(통보)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**
  - ※ (예시) A 제품의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, 사전승인 없이 목업을 3개만 제작하거나 A제품의 목업이 아닌 PCB를 제작한 경우 사업의 무단변경에 해당하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결과물 및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·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실시
- 해당 사업 완료평가는 발표(대면)평가를 원칙으로 함(결과물 지참)
-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지침, 안내사항(지원사업 안내문, 담당자 이메일, 구두 공지사항 등)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No	구비서류	부수	발급처	비고
1	필수 사업계획서	1부	진흥원 양식	-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<b>PDF 파일로 제출</b>
2	필수 (신청기업) 사업자등록증	1부	국세청 홈택스, 관할세무서	- 모집공고일 기준 <b>1개월 이내</b> 발급 서류만 유효함 - 용인 공장 소재 기업은 <b>공장등록증도 함께 제출</b>
3	필수 (신청기업) 중소기업확인서	1부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	- 공고일 기준 <b>유효기간 이내</b> 발급 서류 제출
4	필수 2024년 재무제표	1부	국세청 홈택스	-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- 법인사업자도 당해연도 결산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
5	필수 지방세/국세 납입증명서	각 1부	국세청 홈택스, 정부24	- 공고일 기준 <b>1개월 이내</b> 서류만 유효 - 지방세, 국세납입증명서 각각 제출( <b>1개월 이내</b> )
6	필수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	각 1부	진흥원 양식	- <b>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모든 인원 서명 필수</b> (대표자, 담당자 모두 서명하여 <b>PDF 파일로 제출</b> )
7	필수 (대행업체) 사업자등록증	1부	-	- 신청기업에서 선정한 제작 관련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
8	필수 (대행업체) 견적서	1부	-	- 대행업체 직인 날인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필수
9	선택 기타 가점 증빙서류	각 1부	-	-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(진흥원 입주기업 계약서, 여성기업 확인서,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서 등) * <b>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</b>

- ※ 모든 서류는 **PDF 파일**로 제출해야하며, **개인정보(주민번호 뒷자리)**는 삭제 후 제출
- ※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, 신청자격 상실 및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※ 선택서류는 각 서류의 배점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시 제출

- 별첨 1. 2025년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계획서 양식 1부.  
2.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양식 1부.  
3. 2025년 진흥원 지원사업 목록 및 공통안내문 1부. 끝.

**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**

구 분	제재 및 환수 사유	제재 및 환수기준	
		참여제한	지원금 환수
부정 수급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한 방법(타기관 중복수혜 등)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	3년	전액 환수
중단 · 실패	<input type="checkbox"/>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, 실패한 경우	3년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기업 부도, 폐업, 대표자 사망 등 중단,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	면제	집행잔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	2년	전액 환수
포기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○ 관련 증빙 제출 필요	면제	전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	경고	전액 환수
사업비 집행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,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○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○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	주의 경고	해당없음 해당금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	경고	해당금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 결과물 및 지출 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·보고한 경우	3년	전액 환수
협약 위배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 명령에 불응한 경우	2년	해당금액 환수
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,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	경고	해당 없음
	<input type="checkbox"/> 진흥원 승인(통보)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○ 중간점검, 완료평가 결과(물)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	경고	해당없음 (필요시환수)

- \*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\*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
- \* 경고 2회 = 참여제한 1년, \* 주의 2회 = 경고 1회
- ※ 경고 및 주의는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년간 적용함
- \*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
- \*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
- \* 지원금 횡령, 편취, 유용한 경우, 「공공재정환수법」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
- \*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,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